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-938호
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0호(2008.06.12..)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89호(2020.12.24.)로 결정 변경(재정비)된 「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열람공고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종로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북촌 지구단위계획」 결정조서 상 허용2(북촌 2, 3, 5구역)의 문화 및 집회시설 비한옥 관련 허용 용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한옥 건축

II. 지구단위계획 사항

①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- ①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- ②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- ③.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 -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-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 - 가. 용도계획 결정조서
 - 1) 허용용도(기정)

도면 표시	적용 구역	건축법상용도	세부용도	비고
허용 1	북촌1	문화 및 집회시설	박물관, 미술관, 화랑 (갤러리), 문화관, 체 협관, 기념관, 전통공 방, 전통체험시설	한옥의 경우(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) 준 수 시 허용 비한옥의 경우, 1층에 한하여 허용

허용 2	북촌2 북촌3 북촌5	문화 및 집회시설	박물관, 미술관, 화랑 (갤러리), 문화관, 체 험관, 기념관, 전통공 방, 전통체험시설	한옥의 경우(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) 준 수 시 허용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) 허용용도(변경)

도면 표시	적용 구역	건축법상용도	세부용도	비고
허용 1	북촌1	문화 및 집회시설	박물관, 미술관, 화랑 (갤러리), 문화관, 체 험관, 기념관, 전통공 방, 전통체험시설	한옥의 경우(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) 준 수 시 허용 비한옥의 경우, 1층에 한하여 허용
허용 2	북촌2 북촌3 북촌5	문화 및 집회시설	박물관, 미술관, 화랑 (갤러리), 문화관, 체 험관, 기념관, 전통공 방, 전통체험시설	한옥의 경우(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) 준 수 시 허용 비한옥의 경우 입지 가능(신설)

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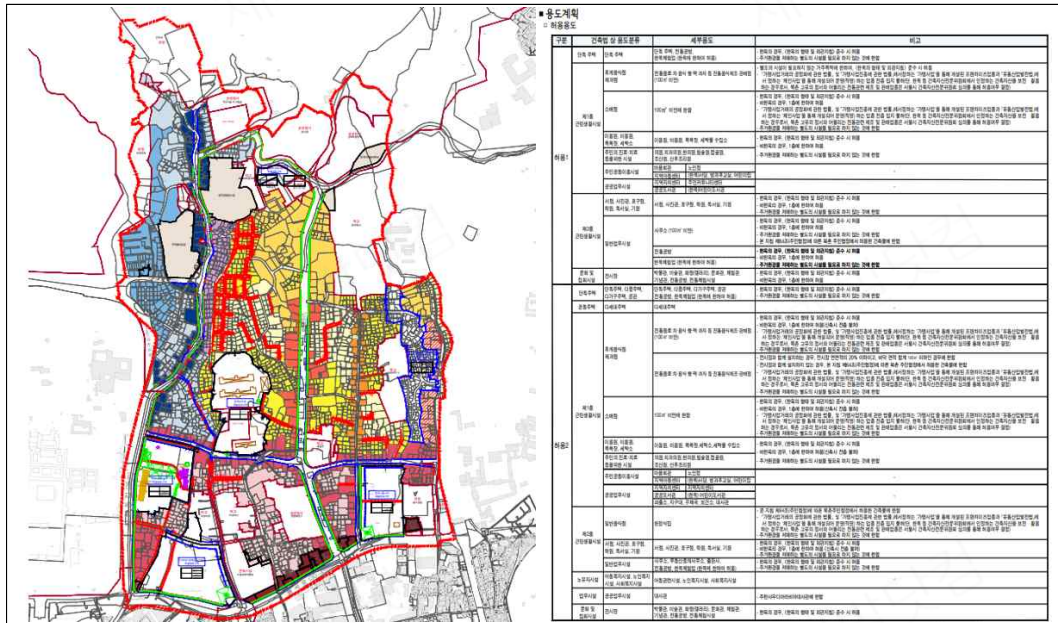
1.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: 변경

※ 결정도 붙임 참조

III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(☎ 2148-2813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
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1.

-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-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